

제목 : 『야간금고약관』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『야간금고약관』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행 예정일 : 2022.03.24
- 개정 약관명 : 야간금고약관
- 기존손님 적용여부 : 적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 1 조(금고의 이용) ~ 제 4 조(분실 신고 등) (생략)	제 1 조(금고의 이용) ~ 제 4 조(분실 신고 등) (좌동)	
<p>제 5 조(면책)</p> <p>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<u>넣어</u> 생긴 사고 등 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<u>생긴 사고나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</u> 거래처에게 생긴 손해 및 제 4 조의 분실신고나 절차지연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	<p>제 5 조(면책)</p> <p>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<u>넣고</u> <u>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거래처에게 발생한</u> 손해 및 제 4 조의 분실신고나 절차지연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</u></p>	<p>-넣어->넣고</p> <p>문구수정</p> <p>-넣어 생긴 사고</p> <p>-생긴 사고나</p> <p>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</p> <p>->문구삭제</p> <p>문구추가</p>
제 6 조(해약) ~ 제 8 조(준용) (생략)	제 6 조(해약) ~ 제 8 조(준용) (좌동)	